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)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써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,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(별표)
- 나.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(제3조, 제7조)